

의안번호	제 140 호
의결 연월일	2022. 11. . (제 회)

충청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김꽃임 의원 등 8인
발의연월일	2022년 11월 일

충청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꽃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0
----------	-----

발의연월일 : 2022년 11월 08일

발 의 자 : 김꽃임·이옥규·박경숙·김국기·
이양섭·이의영·이종갑·임병운 의원

1. 제안이유

- 도민의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 일·생활 균형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안 제7조)
- 일·생활 균형 관련 사업을 법인·단체 등에 위탁(안 제8조)

3. 조례안 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붙임

나. 조례안예고 : 2022. 11. . ~ 2022. 11. .

다. 협 의 :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

라. 비용 추 계 : 붙임

충청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생활 균형”이란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이란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 가정, 사회 전반의 체계를 갖춘 환경을 말한다.
3.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이란 직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 등을 운영하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생활 균형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관련 캠페인 확산
3.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일·생활 균형 지수 개선
5.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민관협력이 필요한 사항
6. 일·생활 균형 실천에 이바지한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7. 그밖에 일·생활 균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지원 정책수립과 시행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사업
2. 일·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일·생활 균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4.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5. 그밖에 일·생활 균형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생활 균형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2. 일·생활 균형 직장 컨설팅

3. 일·생활 균형 직장교육

4. 그밖에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지원에 이바지한 기관, 법인,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충청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일과 생활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일·생활 균형 있는 사회·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3. 관련 조문

- 안 제7조(지원사업)
 - 일·생활의 균형 있는 사회·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 추계기간 :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2)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비

나. 추계결과

- 1) 산출 과정
 - 행복한 일자리 조성 사업 : 30개소 × 2,000천원 = 60,000천원
 - 워라벨 실천 사업 지원 : 100명 × 500천원 = 50,000천원
- 2) 산출 결과 : 연간 110,000천원,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550,000천원 소요다. 재원 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세출)

(단위: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550,000	110,000	110,000	110,000	110,000	110,000
행복한 일자리 조성 사업	30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워라벨 실천 사업 지원	2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